



##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시기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업체를 위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수요일 기준

### 목적

본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시기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업체를 위한 임시 지침("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업체를 위한 코로나 19 임시 지침")은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사업장 재개방 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사업장 소유자/운영자 및 직원, 계약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푸드 트럭, 기타 식품 매점 등 모든 식당 및 식품 서비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1 단계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1 단계를 시행 중인 지역에서 해당 사업체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2 단계가 시작된 지역에서 해당 사업체는 고객이 적절히 떨어진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경우 야외 장소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즉 실내 식사 및 바 공간은 고객에게 개방 금지). 또한, 야외 바 좌석이 있는 식당은 고객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야외 공간에서 음식 및/또는 음료는 테이블이나 바에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최소 요건일 뿐이므로 고용주는 자유롭게 추가 예방책을 제공하거나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주 재개방 2 단계 시행 중 가장 잘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에 기반하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한 자료는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자주 바뀝니다.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최신 요건을 알고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운영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센터(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 식품 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및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는 코로나 19가 식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식품 서비스 사업체를 위한 뉴욕주 위생 규정(NYS Sanitary Codes)과 본 지침에 나온 추가 요건에 따르면 코로나 19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를 발령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모든 식음료 사업체 내에서 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업무를 종료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습니다. 안면 가리개는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표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 운영자/소유자에게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및 비필수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더하여 보건부가 발행한 지침과 명령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가 발행한 다른 지침 문서와 가를 경우 최신 지침이 적용됩니다.

## 뉴욕주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업체 책임 기준

야외 또는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업체는 다음과 같은 최소 주 기준을 따라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방 요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관리센터,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실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업체에 적용됩니다. 실외 또는 테이크아웃/배달 식품 서비스 업체의 운영자 또는 해당 운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모두 "책임 당사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인 세 가지 뚜렷한 범주로 정리되었습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본 지침의 목적으로 "야외 공간"은 음식 및/또는 음료 섭취용으로 지정된 열린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공간에는 임시 또는 고정 덮개(예: 차양 또는 지붕)를 설치할 수 있는데, 최소한 두 면이 열려 공기가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야외 공간에서 모든 테이블 및 의자는 다른 테이블, 의자, 고객, 통로 보행자로부터 6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 또는 식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38에 따라 근접 공공장소(예: 보도)를 사용하려 하며 해당 지자체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당국은 도보 보행자 수, 보도 공간 이용성, 불필요한 막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도로 또는 통로에 테이블을 두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 당국은 해당 바 또는 식당이 테이블과 보행자 도로 또는 통로 사이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최소 5 피트 높이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실내를 통해 야외 의자, 화장실, 결제 장소에 가야 하는 고객을 위해 실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항상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업무에 6 피트 이하의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요리, 청소, 테이블 정리, 점검)는 제외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고객 또한 만 2 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도 괜찮은 경우,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에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일회용 마스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직접 만든 얼굴 가리개는 업무의 성격상 주로 개인 보호 장비(PPE)로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업무용 얼굴 가리개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N95 마스크 또는 기존 산업 기준에 맞는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지침을 따릅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야외 테이블 수를 안전하고 적절히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며 테이블은 서로 6 피트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야외 테이블에 고객이 앉았을 때 사방에서 최소 6 피트가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테이블 사이에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테이블 사이에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리적 차단막 높이는 최소 5 피트여야 하며 절대 비상구 및/또는 화재 대피구를 막으면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집단(즉 고객 그룹) 사이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이 야외 바 구역에 앉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바 직원이 서로 및/또는 고객과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블에 공간이 있는 경우 테이블당 최대 10 명이 앉을 수 있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같은 그룹의 일원이나 다른 가족일 수 있습니다.
  - 여러 집단이 동시에 앉는 긴 테이블은 집단 간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실내 고객용 식사 및 좌석 구역을 폐쇄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대기 구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표시한 경우 고객에게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작업대/직원 휴식 장소를 사방에서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조정하거나 그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방(예: 나란히 앉을 때 및 서로 마주 볼 때)에서 6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사용 후마다 청소 및 소독하지 않으면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예: 픽업 장소, 계산대)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차단막(예: 플라스틱 보호벽)을 설치할 수 있으나 공기 흐름, 난방, 냉방, 환기를 방해하거나 비상구 및/또는 화재 대피구를 막으면 안 됩니다.
  - 물리적 차단막을 사용하는 경우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지침을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차단막 종류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글라스 또는 유사 자재, 기타 불투과성 칸막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공간(예: 냉동고 또는 저장실)에 한 번에 두 명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에서 모든 직원이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더라도 최대 공간 점유율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은 제외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규약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로 야외 공기가 들어오게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예: 주방 창문 및 문 열기).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공간에 테이프나 표지판으로 화살표를 표시하여 양방향 유동 인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줄을 서는 구역,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역(예: 출퇴근 카드 장소, 건강 검진 장소, 휴게소)에 6 피트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공간에 6 피트 거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고객이 음식 주문, 픽업, 착석, 화장실 사용을 기다리는 줄(예: 테이프 사용),
    - 픽업 또는 결제 장소(예: 카운터, 테이블, 계산대).
- 책임 당사자는 고객용 입구/출구를 지정하고 가능한 경우 직원용 입구/출구를 나누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음식을 픽업할 준비가 되거나 자리가 날 때까지 차량에서 기다리거나 야외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기다릴 것을 권장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온라인 또는 휴대폰으로 주문할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주문, 결제, 배달, 픽업 및/또는 도로변 픽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 비접촉식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지갑 사용을 최소화하고 종이 영수증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사업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착석 전 미리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업장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신호와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가 사업장 작업 공간 또는 장소에 맞게 표지판을 만드는 경우 보건부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는 직원과 고객이 다음 사항을 기억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마스크 또는 천 얼굴 가리개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십시오.
  -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이에 노출된 경우 보고하십시오(보고 방법 포함).
  - 손 위생, 세척, 소독 지침에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 B. 폐쇄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예: 직원 회의)을 제한하고 질병관리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개방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며 직원이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에 앉는 경우 의자 사이 간격을 띄우고 한 의자씩 거르고 앉기).
- 책임 당사자는 사람이 모이거나 많이 만질 수 있는 비필수 편의 시설 및 공유 구역(예: 자판기, 공동 커피 머신)의 폐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소 등 좁은 공간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신호 체계(예: 사용 중 표시)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책임 당사자는 실행이 가능한 한 이러한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임(예: 쉬는 시간, 식사, 근무 시작/중지) 시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즉 6 피트 공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나누어야 합니다.

## C. 작업 공간의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 간 접촉 및 모임을 줄여야 합니다.
  - 필요한 직원만 있을 수 있게 제한하기,
  - 영업 시간 조정하기,
  -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줄이기,
  - 근무 시간 설계하기(예: A/B 팀, 출발/도착 시차),
  -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작업 우선시하기,
  - 예정된 작업에 시차를 두어 한 장소에서 여러 그룹 및/또는 팀이 일하는 것 피하기, 사용 중인 장소에 표지판으로 표시하기, 및/또는
  - 가능한 경우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동시에 장비를 만지는 횟수를 줄이도록 활동 나누기.
- 책임 당사자는 재료 준비 직원에게 근무 중 다른 사람의 작업대와 바꾸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적절히 세척 및/소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홀 직원에게 별도의 작업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홀 직원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식당의 특정 구역에서 서빙을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착석 및 서비스를 기다리며 모이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자리를 예약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자리나 주문 음식이 나올 때 알리는 장치(예: 버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음성 안내, 문자 메시지, 화면 안내문을 사용하여 주문 또는 착석을 기다리는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D. 이동 및 거래

- 책임 당사자는 식자재 판매자 픽업 및 배달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에서 상호 작용(예: 근무 종료 직원용 출구와 근무 시작 직원용 입구 지정)과 이동(예: 직원은 가능한 한 자신의 작업대를 떠나지 말아야 함)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한 식자재 판매자가 배달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을 직원이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음 판매자가 올 수 있도록 1회 1 판매자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입구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안전 및 기타 해당 규정을 지키는 동시에 아래 설명한 대로 (1) 건물의 유동 인구를 관리하고 (2) 건강 검진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 가능한 경우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검진 차를 기다릴 때 6 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계획을 만드십시오.

## II. 장소

### A. 주방 구역

- 책임 당사자는 업무에 복귀하기 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복귀 전 검사와 주방 시스템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직원이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방을 변경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근무 시간에 시차를 두어 미리 작업(예: 재료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직원이 근무 중 가능한 한 자신의 작업대(예: 샐러드 또는 그릴, 디저트)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하는 경우 작업대와 구역 바닥에 테이프를 사방에서 6 피트 떨어진 거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직원에게 음식을 주고 받지 말고 홀 직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카운터에 두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직원 간 주방 장비(예: 칼, 냄비, 행주/수건) 공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B.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업무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외에도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조달, 제작하거나 얻어야 하며 해당 얼굴 가리개를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하거나 식자재 판매자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얼굴 가리개, 마스크,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비축량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는 천(예: 직접 바느질한

천, 간단히 자른 천, 반다나),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얼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얼굴 가리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센터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천 얼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철저한 얼굴 보호가 필요한 업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95 마스크는 천 또는 직접 만든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은 특정 식품 서비스 활동에 필요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해당 안전 장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개인의 얼굴 가리개(허용 가능한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나 얼굴 가리개를 스스로 담당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직원이 소장한 보호용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추가로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상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직원은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해당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이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위생 규정(State and Local Sanitary Codes)에 따라 직원이 손을 소독하고 손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재료 준비가 아닌 업무 중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 직원이 자주 장갑을 교체하게 해야 하며
    - 직원이 업무를 바꿀 때(예: 서빙에서 식사 도구 준비로 교체) 장갑을 교체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손을 자주 씻거나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블 정리를 하는 직원이 비누/물로 손을 씻게 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테이블 청소 및 소독 전후에 장갑을 교체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사업장에 출입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만 2 세이며 의학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때(예: 픽업을 기다릴 때, 카운터/창구에서 주문할 때, 테이블 밖으로 이동할 때, 화장실을 오갈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먹거나 마시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라고 권장해야 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건(예: 주방 도구, 펜/메모지)의 공유와 여러 사람이 만지는 표면(예: 문고리, 키패드, 터치 스크린)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 물건이나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접촉할 때 직원이 장갑(작업용 또는 의료용)을 끼거나, 사용 전후에 손을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어떻게 끼고, 벗고, 세척(해당하는 경우), 폐기하는지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얼굴 가리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관리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청소,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구역, 날짜,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에 다음과 같이 손 소독 장소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흐르는 온수, 일회용 종이 수건, 봉지를 씌운 쓰레기통.
  - 손 소독: 최소 알코올 60%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손 씻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소에 비치.
  - 책임 당사자는 자주 만지는 구역(예: 야외 화장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합니다. 손 소독제는 입구, 출구, 계산대 등 편리한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자동 손 소독제 분사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가 급수대를 제공할 수 없는 푸드 트럭이나 매점에서 직원은 장갑을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연방, 주, 지방 식품 처리 및 위생 요건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 장소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변에 개인 보호 장비 등 오염된 물건을 폐기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십시오.
- 테이크아웃/배달을 위해 책임 당사자는
  - 고객이 음식 및/또는 음료를 기다릴 때 사용할 손 소독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 직원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게 하고 직원이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교체하게 하십시오.
  - 픽업/배달 장소가 실내/단힌 공간에 있는 경우 창문 및/또는 문을 열고 환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자주 만지는 표면에 사용하기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제품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해당 표면 사용 전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제품을 사용한 후 손을 소독하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장소와 자주 만지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철저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이 끝날 때마다 또는 매일, 필요한 만큼 자주 하십시오.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표지판, 사용 중 표시, 기타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가능한 경우 화장실 점유율을 줄이고 거리 두기 규칙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작업대를 바꿀 때마다 또는 새 도구 세트를 사용할 때마다 등록 소독 제품을 사용하여 장비 및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코로나 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등록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청소 및 소독 제품 또는 청소 및 소독 행위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물질 또는 기계를 손상시킬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 이용할 수 있는 손 소독 장소를 배치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공급하거나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경우 노출 장소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 유통 인구가 많은 장소 및 자주 만지는 표면(예: 공유 도구, 장비, 기계, 작업대, 키패드, 전화기)을 포함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의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관리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 바이러스에 노출된 공간은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푸드 트럭 직원이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인 경우 청소 및 소독이 끝날 때까지 푸드 트럭을 닫아야 합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에서 공기를 순환하십시오.
  - 24시간 후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유 공간, 공유 장비 등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 해당 구역을 적절히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에 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공공 또는 민간 근로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를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후 7일 이상 지난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기적 청소 및 소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식음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점심을 싸 오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점심을 먹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직접 제공되는 모든 양념이 일회용 용기나 정기적으로(사용 후마다) 세척/소독하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들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일회용 종이 메뉴를 제공하거나 화이트보드/칠판/텔레비전/프로젝터에 메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사용할 때마다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온라인 메뉴(예: 스마트폰 또는 전자 장치 사용)를 확인할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포장된 식사 도구 또는 냅킨으로 싼 식사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식사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포장되지 않은 빨대 및 이쑤시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C. 단계적 재개방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업무가 정상 수준이 되기 전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방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재개방 시 변화에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시간 수, 서비스 제공 고객 수를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 지침, 훈련, 표지판 등 직원, 식자재 판매자,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만들고 직원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이메일 그룹,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III. 절차

#### A. 선별 검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일일 건강 검진을 의무로 시행하고 가능한 경우 식자재 판매자에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검진은 고객과 배달 인력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검진은 가능한 한 직원이 출근하거나 근무하기 전 원격(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으로 하거나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 검진을 완료하기 전 직원끼리 가까이 어울리거나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과 식자재 판매자에게 질문하여 검진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a)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는지,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증상이 있었는지.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건강 검진을 완료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나 그것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선택권을 주어 정보를 일지에 기록하고 접촉자 추적 시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중 또는 후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우 등 검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뀌는 경우 즉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검진 질문뿐 아니라 일일 체온 검사는 미국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정보(예: 체온 정보)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감염 가능성 있는 직원 또는 판매자가 현장에 들어와 체온 확인 등 검진 활동을 하는 인력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센터, 보건부,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 규약을 잘 알며 고용인이 인정한 개인이 검진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검진자는 최소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이 나온 직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주고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양성 판정 사례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일 선별 검진 절차에서 모은 직원 및 판매자 답변을 모두 검토하고 검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차후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검진 질문에 명시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직원에게 집단적 접촉점을 확인하여 알려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을 모두 계속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 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일터 또는 구역에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직원, 판매자 포함)의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나 비접촉식 수단을 사용한 고객 및 배달 인력은 제외합니다. 직원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을 경우 접촉자를 확인하고 추적하여 알릴 수 있도록 일지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에 협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건강 검진을 완료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나 그것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B. 추적

- 현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즉시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을 모두 계속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 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교류했던 직원, 판매자, 고객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가 일터에 있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보건부에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기(둘 중 더 이른 것) 48 시간 전에 일지를 쓴 모든 직원, 식품 서비스 업체에 출입한 판매자/고객(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연방 및 주 법,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방 보건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감염 및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고 자가 격리 조치 등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한 적 있다는 알림을 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알림을 받는 사람은 알림을 받은 즉시 자신의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에 나온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완료된 안전 계획을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체 재개방 안전 계획 견본을 제작했습니다.

### 추가 안전 정보, 지침, 자원 확인처: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ronavirus (COVID-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귀하가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약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